

2022년도 제6차 재경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2. 10. 4.(화) 15:00 ~ 16:05

2. 장소 : 행정관 4층 소회의실(비대면 회의)

3. 참석 현황 : 재적위원 30명 중 참석 26명, 불참 4명

□ 참석위원(26명)

- 당연직(9명) : 기획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시설관리국장, 재정전략실장, 발전기금 상임이사
- 임명·위촉직(17명)
 - 학내위원(8명) : 안OO, 김OO, 박OO, 김OO, 이OO, 최OO, 김OO, 류OO 위원
 - 학외위원(9명) : 김OO, 김OO, 김OO, 박OO, 윤OO, 이OO, 이OO, 정OO, 최OO 위원

□ 불참위원(4명)

- 이OO, 김OO, 이OO, 서OO 위원

※ 배석(4명): 예산과 이OO, 기획과 구OO, 김OO, 회계지원팀장

※ 참관(1명): 학부 대표 김OO

4. 안건

□ 전차 회의록 보고

- 2022년 제5차 재경위원회 회의록

□ 심의 안건

- 서울대학교 임원 보수 지침 제정(안)
- TEPS사업 양수 추진계획 및 협약서(안)

- 2021회계연도 서울대학교 종합재무제표(안)

5. 회의 결과

가. 전차 회의록 보고

□ 2022년 제5차 재경위원회 회의록

- 보고자 : 김용철 예산과장
- 2022년 제5차 재경위원회(2022. 5. 31.)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함

나. 심의 안건

□ 서울대학교 임원 보수 지침 제정(안)

- 보고자 : 성제경 기획처장
- 안건 요지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총장 등 임원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보수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제시된 의견
 - 제6조(퇴직금) 관련하여 근로자와 대비되는 사용자의 개념인 임원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이 모순점은 없는지
 -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지급기준을 차용하는 것이지 해당 법의 모든 범위를 따르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이 퇴직금 조항에 적용될 여지는 없음
 - 교원으로서 기존에 적용된 퇴직금과 총장으로서의 적용되는 퇴직금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 요청
 - ↳ 교원이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는 경우에는 교원을 사직하고 총장으로 임용되는 신분상의 변화가 생기는 것임. 다만, 퇴직금 지급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지급기준을 따라야 하는지는 실무적으로 재검토하여 사후 보고 예정
 - 제6조(퇴직금)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에서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의견 제시

↳ ‘준용하여’ 로 수정시 해당 법의 직접 적용이 아닌 것처럼 표현이 순화될 수 있을 것 같음

- 심의결과 : 원안대로 심의함.

□ TEPS사업 양수 추진계획 및 협약서(안)

- 보고자 : 성제경 기획처장

- 안전 요지

- TEPS사업 관리조직을 서울대학교로 이관하여 언어교육원에서 일원 관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 양수 추진계획 및 협약서를 심의하고자 함

- 제시된 의견

- 발전기금의 TEPS사업이 부진해지자 학교로 이관한다는 것이 다른 사업들에 좋지 않은 전례를 만들게 될까 우려되며, TEPS사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검토해서 민간에 매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TEPS사업은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기 전에는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없어 발전기금에서 사업을 하고 언어교육원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을 택한 수익모델임. 그동안 다양한 논의와 외부 컨설팅을 통해 발전기금과 언어교육원이라는 현재의 이중구조를 일원화하여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현재로서 가장 가능한 방안인 학교로 이관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 것임

- 3년 연속 손실이 발생하면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손실의 기준을 높여서 재검토하는 것은 어떤지

↳ 단순히 손실의 많고 적음보다는 향후 발전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문제를 출제하는 언어교육원과 운영을 담당하는 발전기금의 사업본부가 통합되면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되며, 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전반적인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하여 사업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임

↳ 양해각서(안) 제4조의 양도·양수 대금으로 결정된 20억원은 올해 4월 기준 TEPS사업이 가지고 있는 적자 를 발전기금이 서울대학교 법인에 납부한다는 보전 개념이므로 서울대학교가 추가로 투자하는 것은 아님. 실제 협의시 11월 기준으로 재평가하게 되면 상당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이관 후에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임

- 인력 계속 승계와 관련하여 발전기금 TEPS사업본부와 언어교육원 인력에 대한 고용 승계 및 업무 재배치에 대한 질의
 - ↳ 사업 양수 체결시 발전기금 TEPS사업본부 인력은 언어교육원 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되는 것이며, 향후 해당 사업 폐지시 다른 업무로 재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함
- **심의결과** : 원안대로 심의함.

□ 2021회계연도 서울대학교 종합재무제표(안)

- **보고자** : 성제경 기획처장
- **안전 요지**
 - 유형자산은 서울대에서 연구기자재 409억원, 비품 344억원, 산학협력단에서 비품 514억원 등 총 1,774억원 취득하였지만 감가상각비 1,628억원 효과로 인해 전년대비 총 55억원 증가
 - 정부출연금및보조금은 출연금수입이 280억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총 14억원 증가
- **제시된 의견**
 - 전체 거버넌스 확보 차원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발전기금 세 기관과 다르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과대 발전기금을 종합재무제표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을 제안
 - ↳ 단과대 발전기금을 포함시키는 현재 종합재무제표는 대학 본부 입장에서 종합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데에 다소 왜곡이 있어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함
 - 종합운영계산서상 산학협력수익 및 지원금수익이 전년 대비 운영수익에 가장 큰 기여를 했는데 해당 수익은 매년 국가 또는 연구비 지원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큰 부분이므로 재정 독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고정성 비용을 줄이는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함
 - ↳ 자체 재원 비중을 계속 증가시키기 위해 산학협력수익을 늘리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고,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도 비용 효율화 관련 문제점 및 방안을 제기해주셨으므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심의결과** : 원안대로 심의함.